하나UBS자산운용
150-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-3번지
Tel: 02-3771-7800 www.ubs-hana.com

하나UBS자산운용

상 품 : 제2019 -83호 2019. 11.01
수 신 : 수신처 참조
참 조 : 상품기획 관련 담당 부서장
제 목 : 소규모펀드 공시 및 해소 안내

귀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당사에서 운용하는 소규모펀드의 수시공시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10월 중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- 아 래 --

1. 관련근거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3항

2. 적용 대상 :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,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소규모 정리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모펀드 이전, 합병, 교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

3. 해소방법 : 모펀드 교체

4. 대상펀드명 :
(모)하나UBS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(자)하나UBS대한민국1호증권자투자신탁[주식](첨부파일참조)

5. 처리 방법 : 수시공시

6. 공시기준일 : 2019년 10월 1일~2019년 10월 31일
7. 소규모 발생일 : 2019년 10월 5일
8. 소규모 해소일 : 2019년 10월 28일

9. 공 시 일 : 2019년 11월 1일

첨 부 :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대상 목록 1부.

발송 No. 74

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
대표이사 이 원 종

수신처 : 하나금융투자, KEB하나은행,키움증권,NH투자증권,교보증권,한화투자증권